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전국병원장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제 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희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10, 311호 (2024.4.30.)
2.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여 안내하며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(E : yjkim@kha.or.kr / F : 02-705-9259)으로 2024.5.31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안 주요 내용

가.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(2024-310호)

- 복지부는 심평원에 의료급여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요청 할 경우,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업무지원 내용 등을 심평원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

나.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(2024-311호)

- 노숙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기존 지정시설에서 전체 1차,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(요양병원 제외)
- 장애인 보조기기명칭·용어·처방전서식 변경 (안 제25조, 별표2)
 - * 전동스쿠터 → 의료용스쿠터, 급여평가 → 제품평가

붙임 :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각 1부.

※ 붙임자료는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에서 다운로드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차장 김영진 팀장 노환우 제2국장 정교숙 제1국장 류항수

시행:보험 제 2024-175 (2024.05.09)

우편번호 04165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
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59) E-mail : yjkim@kha.or.kr